韓文

외국인배우자 내국인과 결혼하여 중화민국국적으로 귀화신청시 호적등기 절차

내정부 2014 년 03 월 수정

신청절차	접수기관	제출서류
결혼등기	호정사무소	I. 대만에서 결혼한 사람 : (1) 결혼증서 (2) 외국배우자의 신분증명서류 및 외국주재 대만영사관에서 검증받은 혼인상황 증명과 그 중국어 번역본 (3) 호적명부 (4) 국민신분증과 도장. II. 외국에서 결혼한 사람 : (1) 현지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검증받은 결혼증명서류와 그 중국어 번역본 (2) 호적명부 (3) 국민신분증과 도장 (4) 외국배우자 신분증명서류 (5) 외국배우자가 대만에와 등기신청할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배우자가 중국어이름을 사용하겠다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현지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검증받아 제출. ※ 외교부에서 공시한 특정국가의 사람과 결혼함에 있어는, 우선 외국배우자 국가에서 결혼등기를 마친후, 결혼증명서류와 그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 현지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면담을 신청하고 면담이 통과되면, 현지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검증받은 결혼증명서류와 중국어 번역본으로 결혼등기를 할 수 있음.
거류비자 신청	당사자가 대만에 있지 않고 본국에 있다면, 본국에 있는 대만영사관에서 직접 거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단기비자를 갖고 대만에 입국한 사람은 대만 각지역에 있는 **외교부 영사사무처** (대만의 중부, 윈린 짜이, 남부,동부에 설치됨) 에서도 거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체류기간 60 일 이상의 비자를 받고,「연장불가」(NO EXTENSION) 또는 재발급 불가라고 기입되지 않았으며, 친족방문에 부합된 사람은 직접 내정부 입출국 및 이민서 각지역 사무처에서 외국인거류증을 직접 신청할 수 있음. 외교부 중부, 윈짜난 지역, 남부, 동부 사무처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됨.	I. 중화민국 배우자의 최근 3 개월내 발급된 대만호적등본 원본 1 부 (이미 결혼등기를 하여 결혼 기재사항에 외국배우자의 국적,외국이름과 출생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II. 신청인의 국가로 부터 발급받은 결혼등기증명 (혼인등기제도가 없는 국가라면,결혼증서로 갈음한다.). III. 신청인의 국가로 부터 발급받은 무범죄기록증명 또는 양민증. (발급일부터 1 년이내 야 하며, 증명서류에 기입된 유효기간을 넘으면 불가.). IV. 대만 위생복지부에서 지정한 외국인 신체검진 병원 또는 외국의 합격병원에서 발급한 3 개월내의 신체검진합격증명. V. 여권 (여권유효기간이 반드시 6 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VI. 최근 6 개월내에 찍은 2 인치 칼라 사진 2 장. 【이상 제 2 항에서 4 항까지의 서류를 외국에서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검증받아야 하며,중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첨부함.】 【단기비자로 대만에 입국하여,대만에서 비자기간이 넘은 경우에는 즉시 출국을 해야하며 대만에서 거류비자를 재신청할 수 없음.】
외국인 거류증 신청	내정부 출입국 및 이민서 각지역 소재 사무처	I. 거류비자로 입국한 사람 : (1) 외국인 거류증 신청서 1 부, 칼라 증명사진 1 장. (국민신분증의 사진규격과 같음. 내정부 호정사 글로벌 정보망 http://www.ris. gov.tw/웹사이트 참조) . (2) 여권과 거류비자 원본 그리고 복사본 1 부 (원본은 검사후 반환) . (3) 거류신청을 하는 사유를 밝히는 증명문서로, 대만국적 배우자가 결혼을 등기한 호적명부 또는 국민신분증 원본과 복사본 (원본은 검사후 반환). (4) 거주지 주소 증명서류. (5) 수수료 : 1 년기간 NT$ 1,000.-, 2 년기간 NT$ 2,000.-, 3 년기간 NT$ 3,000.-. II. 단기비자 60 일 이상의 소지자로, 비자 발급기관에서 연장불가 또는 기타제한을 하지 않은 유효비자를 갖고 입국한 사람 : (1) 외국인거류증 신청서 1 부, 칼라 증명사진 1 장 (국민신분증의 사진규격) . (2) 여권과 단기비자 원본 그리고 복사본 1 부(원본은 검사후 반환). (3) 3 개월내의 건강진단 증명.(외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증명서류를 현지 주재 대만영사관에서 검증받아야 함). (4) 발급받은지 1 년을 넘지 않은 원 국가에서 발급한 국내 전역 형사기록증명서 (최근 5 년내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함.) 증명서에 기입된 유효기간내이어야 함. (이를 현지 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검증받아야 하며, 그 중국어 번역본도 현지 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검증받거나 국내 공증처에서 공증받아서 같이 첨부해야 함.) (5)거류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로, 대만국적 배우자가 결혼등기를 한 호적명부 또는 국민신분증 원본과 복사본 (원본은 검사후 반환). (6)거주지 주소 증명서류. (7) 수수료 : 1 년기간 NT$ 1,000.-, 3 년기간 NT$ 3,000.-. 별도 NT$ 2,200.- 추가로 받음. ※ 거주기간에 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소 이전후 15 일내에 주소변경을 등기신청해야함.
「준귀화 중화민국국적증명」신청. (신청 날짜로부터 계산하여 그전 3 년전까지 합법적으로 계속 대만에서 거주하였고, 거주 당시, 매년 183 일 이상 거주한 사람.)	주거지역 호정사무소에서 신청하면 현지 시청(현청)을 통해 내정부에 전달되어 승인 발급함.	I. 준 국적귀화 신청서 (현장에서 신청하며,컴퓨터로 신청서 프린트) 와 최근 2 년내 찍은 증명 칼라사진 1 장 (국민신분증의 사진규격). II. 합법적이고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 또는 외국인 영구거류증. III. 외국인거류증명서. (국적법 제 4 조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 6 조 규정에 부합되어야함). IV. 상당한 재산이나 전문직기술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거나 생활을 보장할만한 증명. (국적법 시행규칙 제 7 조 규정에 부합되어야함. 단,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사람은 본증명 면제). V. 중화민국 배우자와 결혼등기한 호적명부 (원본은 검사후 반환) ; 중화민국 배우자가 대만에 호적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결혼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는 결혼증명서류 (외국에서 작성되었다면 현지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외국어로 되었다면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 현지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검증을 거치거나 혹은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외국배우자와 본국 배우자의 원국적 신분증명서류, 대만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외국배우자의 혼인상황증명과 중국어 번역본을 현지 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검증을 받아야함. VI. 중화민국 국적 귀화 취득자의 중국어 기본언어능력 및 중화민국 국민의 권리 와 의무 기본 상식 인정기준 제 3 조에서 정한 증명서류. VII. 수수료 NT$200.- (우체국 송금수표로 지불, 수취자 : 내정부). ※ 신청인의 입출국 기록, 형사안건 기록 및 중화민국 배우자와 결혼등기된 호적등본, 호정기관에서 신청. ※ 준귀화 증명은 국적귀화 증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유효기간 2 년으로서, 신청인이 원국가의 국적포기을 신청할때 필요시 사용되며 ; 신청인의 원국가에서 본증명없이도 국적포기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음. (국적법 시행규칙 제 10 조) ※ 신청인은 원국적포기 증명서류를 취득한 후, 「국적귀화 신청」절차에 따라 귀화를 해야함.
원래국적 포기 신청	대만에 있는 원국가 영사관 또는 그 대표처에서 신청.	※ 원국가의 국적포기 신청에 있어는 원국가 또는 대만에 주재하고 있는 원 국가의 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문의바람. ※ 대만주재 원 국가 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발급한 원국적 포기 증명서는 대만 외교부의 재확인을 받아야함. 외국에서 작성된 경우는, 현지 주재 대만 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검증을 받고 대만외교부의 재확인 (국적법시행규칙 제 17 조) 을 받아야함. (검증이나 재확인에 있어는 대만 외교부 영사 사무국이나 외교부 중부,윈린 짜이지역,남부,동부 사무처에서 문의바람.)
국적귀화 신청 (신청 날짜로부터 계산하여 그전 3 년전까지 합법적으로 계속 대만에서 거주하였고, 거주 당시, 매년 183 일 이상 거주한 사람.)	주거지역 호정사무소에서 신청하면 현지 시청(현청)을 통해 내정부로 전달되어 승인 발급함.	I. 국적귀화 신청서 (현장에서 신청하며,컴퓨터로 신청서 프린트) 와 최근 2 년내 찍은 증명 칼라사진 1 장 (국민신분증의 사진규격과 같음). II. 국적이 없거나,원래 국적을 포기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또는 국적법 제 9 조 단서로, 외교기관에서 발부하여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III. 합법적이고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 또는 외국인 영구거류증. IV. 외국인 거류증명서. (국적법 제 4 조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 6 조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V. 상당한 재산이나 전문직기술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거나 생활을 보장할만한 증명. (국적법 시행규칙 제 7 조에 부합되어야함. 단,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증명 면제함). VI. 중화민국 국적 귀화 취득자의 중국어 기본 언어능력 및 중화민국 국민의 권리 와 의무 기본상식 인정기준 제 3 조에서 정한 증명서류. VII. 중화민국 배우자와 결혼등기가 된 호적명부 (원본은 검사후 반환) ; 중화민국 배우자가 대만에 호적이 없거나 결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증명서류 (외국에서 작성되었다면 현지국 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외국어로 된것이라면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 현지국 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기관에서 검증을 받거나 혹은 공증처에서 공증받아야 함) . 외국배우자와 본국인 배우자의 원국적 신분증명서류, 대만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배우자의 혼인상황증명과 중국어 번역본을 현지국 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검증을 받은후 첨부함. VIII. 수수료 NT$1,000.- (우체국 송금수표로 지불, 수취자 : 내정부). ※ 신청인의 입출국 기록,형사안건 기록 및 중화민국 배우자와의 결혼등기 호적등본은 호정기관에서 신청. ※ 준귀화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 1 항에서 3 항까지, 그리고 제 8 항의 서류만 첨부하면 됨.
대만지역 거류증 신청	내정부출입국 및 이민서 각지역 소재 사무처	I. 거류 신청서 1 부, 증명 칼라 사진 1 장 (국민신분증의 사진규격과 같음). II. 국적귀화 허가증서 원본과 복사본 (원본은 검사후 반환) . III. 외국인 거류증 원본과 복사본 (원본은 검사후 반환) . IV. 거주지 주소 증명서류로, 중화민국 배우자와 결혼등기한 호적명부 또는 국민신분증 원본과 복사본 (원본은 검사후 반환). V. 수수료 NT$1,000.-
대만정착증 신청 (일정 거주기간을 채운 사람: 거주 승인날부터 1 년동안 계속 살았거나, 2 년이상 살고 한해에 270 일이상, 혹은 5 년이상 살고 한해에 183 일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내정부출입국 및 이민서 각지역 사무처	I. 정착 신청서 1 부, 증명 칼라 사진 1 장 (국민신분증 사진규격과 같음)。 II. 대만지역 거류증. III. 중화민국 배우자의 호적명부 또는 국민신분증 원본과 복사본 (원본은 검사후 반환. 이혼한 경우에는 면제함). IV. 최근 3 개월내의 건강진단 합격증명.(대만의 행정원 위생서에서 승인한 병원에서 검사해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검사항목 "을폼"에 맞추어 실시한 건강검사이어야함.) V. 기타 증명서류, 예로:중화민국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재적 주소로 있던 곳의 주택세금 용지 또는 임대계약 원본과 복사본 (원본은 검사후 반환.) VI. 등기우편-반송용 봉투에 주소・수신인을 기재하여 제출. VII. 수수료 NT$600.-
호적등기 및 중화민국 국민신분증 신청	재적지호정사무소	I. 내정부입출국 및 이민서로부터 신청인에게 호적등기할 정착증을 통보함. II. 호적명부. (단독으로 입주한 경우에는 면제. 단,단독으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권증명등 관계서류는 제출해야함) III. 최근 2 년내에 찍은 칼라증명사진 1 장. (국민신분증 사진규격과 같음. 내정부 호정사 글로벌 정보망 http://www.ris. gov.tw/웹사이트 참조) IV. 호적명부 처음 발급시, 수수료 NT$30.- 국민신분증 처음 발급시, 수수료 NT$50.- ※ 신청인은 호적 입적을 하고 나면,곧 국민신분증을 발급 받게됨, 상세한 내용은 재적지의 호정사무소에 문의바람.